원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9호

2026년 제11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1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18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개 요

가. 개요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직무내용
노무관리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1명	기업지원일자리과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현안 대응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업무 ◦ 노동관계 법령 해석 및 검토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건축안전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건축과	◦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지원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전반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직장예비군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총무과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자원 관리 ◦ 직장예비군 교육 훈련 관리 ◦ 전/평시 직장방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물자·장비 및 시설 관리 ◦ 시청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시정홍보실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홍보 기획 및 추진 ◦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추진 등 업무 수행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성매매피해 상 담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여성가족과	◦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등 현장방문 상담 (※ 아웃리치 활동시간: 19시 이후) ◦ 법률 및 의료지원, 쉼터입소, 자활지원 등 자원연계 ◦ 자활지원 대상자 실태관리 ◦ 성매매 근절 위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성매매 종사자 사회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나. 근무기간: 최초 1년 계약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근무실적이 저조하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해당 사업의 폐지, 대체인력 충원 등)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3 응 시 요 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일반요건

○ 국　　적: 대한민국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임용분야	자격·경력 요건 *
노무관리	**【필수】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 **노무관리** 업무 실무경력 **【우대 조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안전	**【필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 **건축설계·구조·시공·감리·안전** 관련 업무 실무경력
직장예비군관리	**【필수】**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원사), 준사관(준위), 장교(중위급 이상) 전역(또는 전역 예정)자이며, **아래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예비군, 민방위 및 예비전력 관리** 관련 업무 실무경력 **【우대 조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예비군 지휘·통솔 경력(중대장 등) 2. 비상대비·상황관리 또는 다수 인원 교육·통솔 경력 3. 국방동원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시스템 운용 경력

시정홍보	**【필수】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콘텐츠 기획・제작・홍보** 관련 업무 실무경력
성매매피해 상담원	**【필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3호 관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개별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갖춘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1년 이상** 성매매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매매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페이지에 계속>

경력증명 * 관련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급), 담당업무 누락 금지**

근무기간	• **종일근무**(주 40시간) **시, 경력 전부 인정** •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비상근,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급기관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 표준 서식 별지 참조

○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근무기간: **최초 1년** * 근무실적 및 사업 지속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

○ 기본 근무시간 등

임용분야	임용직급	상 세
노무관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주 40시간** *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
건축안전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 35시간** *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
직장예비군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 35시간** *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 35시간** *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 ※ 업무 특성상 현장 및 행사 취재 등 **출장 다수**
성매매피해상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긴급상황 발생시 지정된 **현장에 20분 이내 출동** 필요 ※ **야간 및 휴일 중 현장 대응** 업무, **평일 초과근무**(아웃리치활동 **월2회**, 19:00~22:00) 수요

※ 부서 사정에 따라 기본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복　　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험가입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의무가입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보　　수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기본연봉 + 기본수당)	기준 근무 시간	비　고
노무관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2,628천 원	주 40시간	
건축안전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57,463천 원	주 35시간	
직장예비군 관　　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49,962천 원		
시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44,429천 원		
성매매피해 상 담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9,357천 원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임용 당해연도의 다음 해에 지급

▹ 상기 연봉액은 기본연봉 및 기본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합산액이며, 그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본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상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적합여부 심사**

* 적격·부적격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면접평정 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면접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 험 일 정

가.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공고: 2026. 11. 18.(수) ~ 11. 30.(월)

○ 원서접수: 2026. 11. 26.(목) ~ 11. 30.(월) *(공)휴일 제외, 평일만 접수 / 마감 후 추가·수정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접 수 처: 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 * **접수기간 준수**
- **시청 1층 민원담당관**(6·7번창구)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인사팀 접수
  ※ 5급(호) 및 가급이상: 10,000원 6, 7급(호) 및 나, 다급: **7,000원** 8, 9급(호) 및 라, 마급: **5,000원**
  ※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

【등기우편 접수】

- 주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 (무실동) (우 26384)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택배·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내에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
  (임기제 채용 담당자 : ☎ 033-737-2224)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심사적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2. 1.(화) 예정

다. 면접시험: 2026. 12. 7.(월) 이내 예정 * 재공고시 변동

라.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후 3일 이내

마. 임용(근무시작): 2027. 1월 중 *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한 예정일**이며, 확정 일정은 추후 게시될 서류합격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니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주시청 홈페이지 > 원주소식 > 시험정보 >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 전화,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인 확인 필수
  - ▹ 원서 접수 현황, 면접위원 섭외 지연 등 **부득이하게 이미 고시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엔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제 출 서 류

【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 수수료: ※ 노무관리/건축안전/직장예비군관리: 7,000원
※ 시정홍보/성매매피해상담원: 5,000원
※ 원주시 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수 입 증 지: **원주시청 1층 민원과**(6번 또는 7번 창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해당되는 경우 수입증지 대신 별도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 없을 시, 기재 금지**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기재사항** ※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누락 금지

근무기간	• **종일근무**(주 40시간) **시, 경력 전부 인정** •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비상근,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급기관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 표준 서식 별지 참조

◦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 제출 서류상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하며, 아닐 경우 이를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요구 가능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차. 주민등록초본 각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파.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 선택사항

◦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유 의 사 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연금법」,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공고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한 후 시험을 진행합니다. (재공고인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초 응시자는 별도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미비, 응시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 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033-737-222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